

[별표 3] <개정 2006.2.23, 2006.6.30>

체인사업종류별 평가기관(제7조제2호관련)

체 인 종 류	평 가 기 관
직 영 점 형	「민법」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체인스토어협회
프랜차이즈형	「민법」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편의점협회
임의가맹점형	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
조 합 형	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